

[시행 2021. 2. 9] [대통령령 제31434호, 2021. 2. 9, 일부개정]

교육부 (교원양성연수과) 044-203-6482

19 () ①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「유아교육법」 별표 1 · 별표 2 또는 「초 · 중 등교육법」 별표 1 ·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. 〈개정 1998. 8. 11., 2006. 4. 6., 2011, 10, 25,〉

-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「유아교육법」제22조제3항 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,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.〈신설 2011, 10, 25,〉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1. 6., 2013. 3. 23.>
- 1.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
- 2.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(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
- 3.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
- 4. 법률 제7068호 초·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- 5. 「유아교육법」 별표 2의 준교사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
- 6.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
-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 11. 6., 2013. 3. 23.>
- ⑤ 삭제<2012. 11. 6.>
- ⑥ 삭제<2012. 11. 6.>
- ⑦ 삭제<2012. 11. 6.>
- ⑧ 삭제<2012. 11. 6.>
- ⑨ 삭제<2012. 11. 6.>

[전문개정 1992. 2. 17.]

[제목개정 1998. 8. 11.]

<제31434호, 2021. 2. 9.>

- 1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 (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과목 표시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3 (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"4회"는 "2회"로 본다.

법제처 1

무시험검정 합격기준(제19조제3항 관련)

1. 이수학점기준

구분	이수학점
가.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	1) 전공과목: 50학점 이상
사람	2) 교직과목: 22학점 이상
나.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 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 위를 받은 사람(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	1) 전공과목: 50학점 이상(제4조제4 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30학 점 이상) 2) 교직과목: 22학점 이상(제4조제4 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
다.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 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	하지 아니한다)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) 전문상담교사(1급) 양성과정: 18 학점 이상 2) 전문상담교사(2급) 양성과정: 42 학점 이상
라. 법률 제7068호 초·중등교육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 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 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	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양교육과 관련된 과목에서 취득한 다음 각 목의학점 1) 2년 미만의 영양교육과정: 24학점이상 2)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: 36학점이상
마. 「유아교육법」 별표 2의 준교사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의 준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 으려는 사람(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은 제외한다) 바.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	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학점
마. 교사상성특별과성을 이두안 사람	교직과목 18학점 이상

사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의 실 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

교직과목 4학점 이상

비고

- 1. 구분란 가목, 바목 및 사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 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- 2. 구분란 나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.
-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(이하 "표시과목"이라 한다)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
- 나.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
- 다. 다른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. 이 경우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같은 법에 따른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- 3. 구분란 다목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담·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수 있다.
- 2. 성적 기준: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교육과정(이하 "교원양성과정"이라 한다)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

가. 전공과목: 평균 75점 이상 나. 교직과목: 평균 80점 이상

3.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

할 것

- 가.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: 적격 판정 1회 이상
- 나.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: 적격 판정 2회 이상
- 4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. 다만, 제1호사목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에는 1회 이상으로 한다.
- 5. 성인지(性認知) 교육 이수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. 다만,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.